

圖書館法(全文)

(法律 第 1,424 號)
(1963年10月28日公布)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圖書館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須要한 事項을 規定하여 圖書館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함으로써 國民의 教育과 文化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圖書館”이라 함은 圖書, 記錄, 視聽覺資料, 國家 및 地方行政資料, 鄉土資料 및 기타 須要한 資料(이하 “圖書館資料”라 한다)를 莊集, 整理, 保存하여 公衆 또는 特定人の 利用에 供하게 하여 그 調査, 研究, 學習, 教養, 페크리에이션 其他 社會教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

第3條 (圖書館의 種類) ① 圖書館은 그 設立者에 따라 國立圖書館, 公立圖書館, 私立圖書館으로 區分하고 그 設立目的에 따라 公共圖書館, 學校圖書館, 特殊圖書館으로 區分한다.

② 前項에서 “公共圖書館”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莊集, 整理, 保存하여 公衆의 教養과 調査, 研究 및 페크리에이션등 그 利用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

③ 第1項에서 “學校圖書館”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莊集, 整理, 保存

하여 學生 및 教員의 學習, 教養, 調査, 研究 및 페크리에이션등 그 利用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學校의 施設을 말한다.

④ 第1項에서 “特殊圖書館”이라 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기타 法人 또는 團體가 圖書館資料를 莊集整理, 保存하여 그 所屬員의 教養과 調査, 研究 및 페크리에이션 등 그 利用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

第4條 (特殊圖書館에 대한 適用排除) 特殊圖書館과 그 設立者에 대하여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例外하고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5條 (圖書館 施設) ① 圖書館은 그 目的을 達成함에 須要한 建物, 圖書館資料, 閱覽施設 및 기타의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② 公共圖書館은 그 環境과 施設이 이용에 便利하고 保健, 衛生 또는 管理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公共圖書館의 施設基準은 開令으로 定한다.

第6條 (司書職員의 配置) ① 公共圖書館과 學校圖書館에는 開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資料 및 運營에 관한 司書職員 또는 司書教師

를 두어야 한다.

② 司書職員 또는 司書教師의 資格과 養成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令으로 定한다.

第7條 (國家등에 대한 公共圖書館設置의 勸獎)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衆의 社會教育 및 文化的 向上을 為하여 豫算의 範圍안에서 公共圖書館의 設置, 育成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8條 (圖書館의 使用料) 公共圖書館은 그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

第9條 (監督廳) ① 私立의 公共圖書館은 第1次로 市, 郡教育長(서울特別市, 釜山 市教育委員會를 포함한다) 第2次로 道教育委員會, 第3次로 文教部長官의 指導, 監督을 받는다.
② 學校圖書館은 教育法과 私立學校法에 規定된 당해 學校의 監督廳의 指導, 監督을 받는다.

第10條 (停館命令) 監督廳은 公共圖書館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設立者에 對하여 停館을 命할 수 있다.

1. 美風良俗을 현저하게 害하는 行爲가 있을 때.
2. 第5條 第3項에 規定된 施設基準을 維持하지 못한 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여 停館의 方法以外로는 이를 監督할 수 없을 때.

第11條 (廢館申告) 公共圖書館의 設

立者가 당해 圖書館을 廢館한 때에는 그 事由와 圖書에 관한 措置狀況을 밝혀 監督官廳에 廢館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12條 (圖書館資料의 提供과 納本)

- ① 國家機關이 官報, 圖書 기타 刊行物을 發刊한 때에는 그 3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提供하여야 한다.
- ② 地方自治團體가 公報, 圖書 기타 刊行物을 發刊한 때에는 그 3部를 國立中央圖書館과 그가 設立한 公共圖書館에 각각 提供하여야 한다.
- ③ 出版社 또는 前 2項이외의 者가 圖書 기타 刊行物을 發刊한 때에는 그 發行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刊行物의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納本하여야 한다.
- ④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刊行物의 納本을 한 者가 그 刊行物에 대한 實費補償을 請求할 때에는 國立中央圖書館은 그 實費를 補償하여야 한다.

第13條 (圖書館協會) ① 圖書館의 設立者는 圖書館相互間의 資料交換·運營管理에 對한 研究 또는 國際圖書館團體와의 協助 및 기타 事項에 관한 協助와 全體圖書館人의 社會的 經濟的 地位向上을 위하여 圖書館協會를 組織할 수 있다.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 안에서 圖書館協會에 대하여 補助를 할 수 있다.

第2章 公共圖書館

第1節 總 則

第14條 (設立者) 公共圖書館은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만이 設置할 수 있다.

第15條 (公共圖書館의 機能) 公共圖
書館은 다음 各號의 活動을 通하여
公衆에 奉仕한다.

1. 圖書館資料를 蒐集, 整理, 保存
하여 公衆의 이용에 供하고 그 相
議에 응하는 일.
2. 讀書會, 研究會, 鑑賞會, 展示會
기타 行事를 主催하거나 獎勵하
는 일.
3. 다른 公共圖書館 또는 學校圖書
館이나 特殊圖書館과 協助하여 圖
書館資料를 相互交流하는 일.
4. 圖書館業務에 관하여 調查 研究
하는 일.
5. 기타 圖書館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

第2節 國立中央圖書館

第16條 (設置) ① 文教部長官所屬下
에 國立中央圖書館을 둔다.

- ② 國立中央圖書館의 業務를 分掌
하게 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分
館을 둘 수 있다.

第17條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 國
立中央圖書館은 第15條에 規定한
事項외에 다음의 事項을 管掌한다.

1. 國家에 관한 文獻의 蒐集 및 保存

2. 國內外書誌의 作成 및 그 紹介.
3. 圖書館資料의 國際交流.
4. 圖書館學에 대한 調査, 研究.
5. 他圖書館에 대하여 圖書館業務
에 관한 指導 및 援助.

第3節 公立의 公共圖書館

第18條 (公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置)

① 各級地方自治團體는 이 法과 당
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置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公共圖書館에는 어린이部
를 두어야 하며 地域的事情에 따라
分館 또는 移動文庫를 둘 수 있다.

第19條 (補助) 國庫는 公共圖書館을
設置 運營하는 地方自治團體에 對
하여豫算의 범위안에서 당해 圖書
館의 施設과 設備에 奉하는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第4節 私立의 公共圖書館

第20條 (私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置)

私立의 公共圖書館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第5條 第3項의 規定에 의
한 施設를 갖추고 閣令이 定하는 바
에 의하여 監督廳에 登錄을 申請하
여야 한다.

**第21條 (私立의 公共圖書館에 對한 補
助)** ①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
한 私立의 公共圖書館으로서 閣令
이 定하는 司書職員을 두는 경우에
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豫算
의 범위안에서 그 設立者에 대하여

經費의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를 한 때에는 그 補助를 받은 私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立者에 對하여 特別한 指導, 監督을 할 수 있다.

第22條 (指導・助言 및 是正命令)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私立의 公共圖書館에 對하여 그 運營에 關하여 專門的인 指導와 助言을 할 수 있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私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그 施設 또는 運營 기타에 關하여 法令의 規定을 違反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諸요한 是正을 命할 수 있다.

第23條 (報告) 監督廳은 私立의 公共圖書館으로부터 諸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第24條 (圖書館과 同種의 施設) 누구든지 圖書館과 同種의 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다만 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圖書館이라는 名稱은 使用할 수 없다.

第3章 學校圖書館

第25條 (設置) ①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에는 圖書室 또는 圖書館을, 實業高等專門學校, 初級大學, 大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에는 圖書館을 두어야 한다.

②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閣令으로 定한다.

第26條 (職員) 學校圖書館의 職務를 담당할 職員으로서 實業高等專門學校, 初級大學, 大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에는 司書職員을 두어야 하며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에는 각각 司書 教師 또는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教師를 두어야 한다.

第27條 (一般의 利用에의 제공) 學校圖書館은 그 目的達成에 支障이 없는 限 公衆의 利用에 提供할 수 있다.

第4章 罰則

第28條 (罰金) 第2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私立의 公共圖書館을 開設한 者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監督廳의 停館命令에 違反한 者는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9條 (過怠料)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당해 刊行物의 定價의 5倍에 상당하는 金額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現存하는 圖書館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다만 私立의 公共圖書館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2月이내에 監督廳에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